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제안이유

-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부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을 그 기능 및 활동내용이 유사한 부천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상위법에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원으로 재활용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쓰레기문제해결위한시민협의회 기능에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으나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에 재활용사업자 포함여부는 규정을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3호
의결 년월일	2005.5.19 (제119회)

제출년월일 : 2005. 5. 4.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부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
- 나.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그 기능 및 활동내용이 유사한 부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를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로 한다.

제4조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에 규정된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조사·검사하계”를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계”로 하고, 동항 제1호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사용자제”를 “사용억제”로 하며, 동항 제2호중 “법 제16조 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u>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u></p> <p>제4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p>	<p>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 법 제7조제4항----- ----- ----- -----<u>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u> ----- ----- .</p> <p>제4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 ---- <u>법 제15조제1항</u> - ----- -----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p>	<p>----- ----- ----- -----.</p>
<p>제5조(재활용 사업자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재활용 사업자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재활용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②시협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등 실비를 시협의회 구성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에 규정된 부천시쓰레기 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한다.</p> <p>③협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출석한 위원에</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보고 및 검사등) ①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15조제4항</u>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u>조사·검사하게</u> 할 수 있다.</p> <p>1. <u>법 제15조제4항</u>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u>사용자제</u>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u>법 제16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② (생략)</p>	<p>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보고 및 검사등)① ----- ----- ----- <u>법 제15조제1항</u> ----- ----- <u>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u> ----- 1. <u>법 제10조제1항</u> ----- -----<u>사용억제</u>----- ----- 2. <u>법 제15조제1항</u> ----- ----- -----</p> <p>② (현행과 같음)</p>